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윤재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I. 글을 시작하며

1. 언론피해분쟁의 새로운 국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며,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언론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 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었고 언론피해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언론중재신청과 소송제기 등 피해분쟁이 급증하고 있어서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방향과 취재기법상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보인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언론피해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의 광속(光速)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통신, 취재, 편집 등 언론매체의 장비에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한편, 사회 기존질서와 가치관의 급격한 해체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정보의 가치도 무형적 재산으로서 중요시되고 있고, 분쟁에서도 단순한 정보의 오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진보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언론기관이 정보전달의 주체로서 엄청난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창되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언론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아울러 언론기관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취재보도의 신속함, 정보의 질, 정보의 양을 다투게 되면서 그 차이의 영향이 즉각 나타나고 경쟁에 따른 무리한 정보제공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진 형편이다.

셋째,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 등의 권리의식이 급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나 음성권 등 새로운 권리개념이 대두되는 한편,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즉시적인 권리행사를 행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과거에 높기만 하였던 언론장벽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도도 개인으로는 큰 피해로 여기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 언론기관, 피해자의 세 방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서 언론피해분쟁의 바람직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2. 이 글의 전개방향

필자는 지난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에서 중재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언론중재기일에 직접 심리한 사례 중 전형적인 것을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언론보도에 관한 주요 판례나 이론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각종 간행물에서 이미 충분히 소개, 정리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제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국한시켰고 관련된 이론소개는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였다.

또한 일선 언론인들을 이 글의 주요 독자로 전제하고, 취재관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덧붙여 서울지방법원 언론사건 전담 합의재판부(민사 25부)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여 관련부분에서 소개하였다. 대법원판결 보다 사안이 훨씬 생생하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II. 언론보도의 침해법익 : 인격권

1. 인격권의 개념

언론분쟁을 한 마디로 줄인다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앞서 본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격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현실적 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회의 모든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졌기 때문에 침해법익의 성격과 보호정도에 대한 이해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언론분쟁 판단의 첫 요건으로서 침해법익에 대한 검토가 실무상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찾는다. 또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민법상 불법행위규정,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 등이 인격권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개별적 인격권을 간단히 살핀다.

2. 명예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라고 할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보도 시에 특히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 등을 제외하면 대개가 보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¹⁾

3. 초상권

비주얼 시대, 이미지의 중요성 등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초상권은 보도 내용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갖는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4. 성명권

성명권(Namensrecht)을 인격권의 하나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실무상 성명권은 명예훼손의 내용 속에 용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독립하여 이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름을 잘못 인용하여 인격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유명 연예인과 섭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출연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데 대하여 성명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5. 음성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말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 통화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 변조 처리 없이 방송하여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²⁾

6. 사생활의 비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부분은 인간적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으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7. 신용

형법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 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2)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판결

록 하고 있다.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되면서 언론보도에 의한 신용훼손이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신용이란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경제활동상 사람이나 법인의 채권 이행의무의 성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유형자산에 못지 않은 무형의 자산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신용은 넓은 의미의 명예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인격권과 성질이 다르고, 형법상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적 성질 및 명예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므로 명예훼손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법학의 다수설이다.³⁾ 특히 이를 인격권에서 분리된 경제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중시할 때 언론피해법상 인격권의 보호와 다른 독자적인 구제원리를 개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III. 언론분쟁절차의 종류와 기본 요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본적인 분쟁절차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것은 사후적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발생, 언론 보도의 위법성,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요건이다.

2. 정정보도청구

민법 764조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정보도청구이다. 그 외에도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소송판결이나 형사판결의 보도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인격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만에 인정되는 것이다.

3. 금지청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보통 가처분명령 형식으로 신속히 이루어진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즉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가해자의 비방목적이 분명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실제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언론 측의 비판과 불만이 특히 높지만 인격권 보호에 필요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운영에서 공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

반론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언론법제 특유의 제도로서 민사상의 피해구제제도인 정정보도청구와 차이가 난다. 민

3) 『주석형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p.597 이하

법상 불법행위책임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반박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V.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

1. 3가지 사실관계

1) 명백한 착오 사례 : 2001서울중재197

신청인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 피신청인은 경제일간지.

피신청인은 “케이블TV평가 제대로 하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블TV 시청률 조사가 표본조사 대상이 적고 오차가 크다면서 신청인회사를 포함한 조사기관들이 별도 케이블TV 패널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지상파 방송 조사용 패널에 케이블 TV 시청가구를 추가해 기형적인 패널집단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별도의 케이블 TV 가입가구를 선정하고 10분 이상의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청인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청률 조사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취재하고 신청인의 조사시스템에 대하여는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조사결과에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

2) 일방적 취재 사례 : 2000서울중재310

스포츠 일간지인 피신청인은 ‘북으로 간 진돗개 혈통 논란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시 선물한 진돗개들이 순종 진돗개가 아니라는 일부 진돗개 전문가의 주장을 크게 보도하였다. 즉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과 애견협회 심사위원장의 “위 개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진돗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진돗개전람회장 문전출입을 금지시켜야 마땅한 물골”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으로 간 진돗개에 강한 의심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단지 마지막 부분에 진돗개가 크면 증명될 것이라는 취지의 짤막한 반론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신청인은 정부의 부탁으로 북으로 보낼 진돗개를 직접 선발한 국견협회(國犬協會) 회장이었는데 위 발언자들은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진돗개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3) 사실확인 불충분 사례; 2001서울중재218

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논설위원 칼럼에서 “국사교육, 개혁인가 개악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역사교육 개편안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정부의 역사교육 개편안이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면서 결국 근현대사 교육이 약화된다는 것이 논평의 골자였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 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일리 있는 논평이고 흥미할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관계가 오류라고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논평 중 “고교 국사 교과서를 두 권으로 편찬, 1학년은 조선후기까지 필수로 가르치고 근현대사 부분은 2, 3학년이 선택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한국 근현대사

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시책이다.”라는 부분이였다. 조사결과 개편안에 따르면 필수과목 국사에서도 근현대사가 포함되고 선택과목 국사에서는 이를 독립과목으로 하여 심화 학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담당 논설위원은 일선 교사들로부터 필수과목에서 근현대사가 빠진다는 제보를 받아왔고 칼럼 작성 당시에도 교육부의 고위간부에게 전화로 문의까지 하였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단지 그 간부가 명백한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믿고 논평을 한 것이였다.

2. 중재의 경위

1) 사례 : 중재기일에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가 명확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받아들여도록 설득하여 정정보도하기로 중재 성립

2) 사례 : 중재결과 취재기자가 신청인은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사들을 주로 취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뚝개 순종 여부를 둘러싸고 진뚝개 관련 단체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가 있어서 이러한 취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진뚝개 관련활동에 대한 정정 내용의 보도를 2차례 해주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3) 사례 : 중재결과 칼럼 중 문제부분의 착오가 밝혀져 정정보도하기로 중재성립

3. 분석

1)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사유

언론보도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므로 취재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갖기 어려울 때가 많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 대신에 취재원의 신빙성이나 부분적인 물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피해자가 입는 사회적, 심리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매체 자체의 책임도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소송실무에서는 일찍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진실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유추 적용함과 아울러 보도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보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⁴⁾ 이는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보호 사이에서 양자를 균형 잡게 하는 기능을 하여 왔다.

따라서 명예훼손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하여는 ①보도 내용이 원칙적으로 실제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하다면 내용상 사소한 부분의 착오나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의 기술적 수식으로 인한 변형은 용인된다) ②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절

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2) 사실조사의 정도

취재시 사실조사를 어느 정도 하였을 때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문이나 추측 등에 기초하여 취재를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된다면 이는 위법하다. 그 판단 기준은 확일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 보도매체의 성격(방송, 일간신문, 잡지 등), 보도의 시간적 한계(속보적 보도, 장기 기획물), 보도의 내용(일반적 사항,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대적 사항), 진실확인의 난이도(전화 등 간단한 확인 가능 여부, 고도의 기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면 보도의 성격이 신속을 요하는가 아닌가가 상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인에 대한 보도와 상당성

미국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반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하였다. 1960. 3.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후원단체에서 뉴욕 타임즈에 남부지역의 흑인탄압에 항의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문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었다. 남부 도시의 시정위원인 설리반이 위 신문을 상대로 공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신문이 거부하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법원은 설리반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리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⁵⁾

“공직자의 공무행위에 대하여는 진실에 반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난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거나, 부주의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언론기관의 명예훼손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의 존재를 명예훼손을 당하는 공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부나 공직자를 비판할 경우 진실성의 입증을 요한다면 언론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비판적 기능이 위축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숨쉴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⁶⁾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아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이에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며,⁷⁾ 다만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의혹제기

이러한 상당성 판단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론전개를 한 최근의 하급심판결을 하나 소개한다.⁸⁾ 공적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의혹제기라는 유형으로서 음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5)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법원행정처 간, 『2000년법조출입기자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p.85에서 재인용

6) 현실적 악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미국법의 경향은 표정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p.34 이하 및 p.105 이하 참조

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것 같다.

8) 서울지방법원 2001.7.25.선고, 2000가합51563 이는 언론사건전문재판부(민사 25부)의 판결이다.

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다음 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아래에서는 위 판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였다.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만으로 확정적인 사실의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수집한 자료들 중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언론기관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실 보도만을 요구하고 진실성 입증에 부족하다 하여 책임을 지운다면 언론보도는 질과 양에 있어서 극도로 위축되어 언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 제기도 합리적인 균형을 갖출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실 보도와 더불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의혹제기도 확정적 사실 보도 못지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조건도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강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된다. 즉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가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문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사실보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그 내용에 있어 진실하거나 언론기관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문제기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면 이는 언론기관이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 자체를 보도한 경우와 그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과 같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므로 의혹제기시의 증거수집은 확정사실보도의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가 단순히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강조하는 등으로 그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 보도로 보아 그에 따른 위법성 조각 요건을 따져야 함은 당연하다.)

5) 이 사건들의 경우

앞서 예시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건은 취재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자가 있음에도 한쪽에만 치우쳐 취재함으로써 취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사건은 필자가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하였으나 수집한 자료에 뚜렷한 반대사실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화통화만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경솔하다. 최소한도 교과서개편내용에 대한 기본서류 정도는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4. 유사 참고사례

1)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1) 국제청장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 보도자료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보도기관의 책임이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1가합43911판결).

(2)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사건을 다룬 방송드라마는 시간이 경과되어 진실 여부 확인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의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조사 보고서 등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판결).

(3) 장애자들이 회비착복을 이유로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하는 현장에서 장애자들의 주장을 듣고, 경찰관에게서도 장애자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착복혐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 선고, 82가합 4783판결).

2)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1) 월간잡지사가 악덕변호사로 표현하는 수기 형태의 글을 실은 경우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

(2) 실명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서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않은 채 불명예스러운 내용의 드라마를 방송한 경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판결)

(3) “피해자가 신고 없이 사슴축사를 신축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제보자인 동네 이장의 말만 듣고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피해자의 상관인 면장이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기사 작성한 경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판결)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342 내지 344

피신청인 신문들은 놀이방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놀이방 원생인 3세의 유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하여 발바닥을 컴퍼스로 45차례 찢렸고 이 일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 기사는 신청인을 “박모 씨(29, 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로 표시하였고 그 중 한 신문은 신청인이 경찰조사에서 “같이 일하던 보육교사 한 명이 한 달 전 그만뒀던 일손이 부족한 데다 아이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화김에 실수했다”라고 신청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일으켰으나 수사한 결과 위 유아가 입은 상처는 아이들끼리 병원놀이를 하다가 잘못하여 바늘로 찢려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신청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신문보도는 완전히 허위로 밝혀졌다.

2. 중재의 경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각 신문은 정정보도를 하였고, 1개 신문은 별도로 자세한 사건

경위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를 취하하였다.

3. 분석

1) 수사 중 범죄보도의 한계

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법적인 한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 범죄 자체의 보도와 범죄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혐의자가 사회 유명인이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상 반드시 그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비공식적 협조의 문제이다. 범죄사건의 취재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범죄 수사결과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보도기관은 책임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는 수사기관의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구별된 형식으로 기자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수사관의 비공식적 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식 발표라 하더라도 기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사실을 덧붙이면 책임을 진다.

셋째, 수사기록의 접근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기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취재기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하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기자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인용하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⁹⁾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수사경찰관의 사실상의 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여서(자신

9)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와 방송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의 공개는 당사자에게의 공개는 물론 언론에의 공개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다만 재판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보도도 금지되는 물론이다.

의 놀이방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윤리적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취재기자들은 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각 기사를 보면 우선 제목이 “컴퍼스로 유아 찢른 놀이방 주인 영장”, “택의 자녀 놀이방은?, 아이가 울음 안 그친다고 컴퍼스로 발바닥 44곳 찢러”등으로 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상이 신청인이 범인임을 단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의 신원도 근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한 신문은 더 나아가 신청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고까지 보도함으로써 명백한 허위보도를 하였다. 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부분을 밝히지 않고(나이는 범죄혐의보도의 기본사실로서 기재함이 허용될 것이다) 신청인이 위 범죄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정도로 그쳤어야 옳았을 것이다. 구속영장 내용만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을 기억해야 한다.

4. 유사 참고사례

1) 서울지방법원 2001. 6. 13.선고, 2000가합50546 사건

7개 일간지와 1개 방송사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빚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이 채무자로 하여금 원고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生命保險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교통사고 등을 위장하여 자살을 하라고 강요하였다가 채무자의 신고로 원고들이 구속되었다면서 원고들의 실명, 나이, 거주지역을 특기함과 아울러 TV에서는 인터뷰장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의 말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져 법원의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들이 취재할 때 수사경찰관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사기록까지 보여주는 등(수사기록 중 진술조서 부분이 화면에 방영되었다) 상당한 협조를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은 보험을 이용한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보도 필요성이 컸고 수사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 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언론 각 사가 원고들의 신원을 명시하고, 피고 방송사의 경우 원고가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한 이 사건 보도의 각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국가와 8개 언론사에 대하여 각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보도시에 피해자의 신원을 명백히 드러낸 책임이 주로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지방법원 2001. 4. 25.선고, 2000가합64132사건

원고는 가수인데 경찰에 연행되어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왔다. 원고는 당시 한약을 먹고 있어서 이는 한약성분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묵살되었다. 원고는 이전에도 4차례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수사경찰관에게서 이를 확인한 5개 일간지와 1개 방송사

는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여 제목을 ‘가수 000 또 대마초 적발’로 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분석결과 대마초 성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틀만에 원고가 석방되었다.

법원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여 한 위 각 범죄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공공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도의 상당성 여부에서 소변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수사경찰관의 사실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각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특히 한 신문사는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원고의 항변사실을 함께 기사에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기사 전체를 살펴볼 때 역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가수이므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서둘러 혐의사실을 기정화한 잘못이 크다.

3) 서울지방법원 2001. 7. 25.선고, 2000가합51563 사건

원고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로서 언청이 수술 분야에 있어 권위자인데 피고 방송사가 원고에 대하여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보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치료할 때마다 4-70만 원, 4년간 합계 3,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기형 상태의 언청이 환자의 입 부근의 사진, 범죄일람표, 통장을 찍은 사진, 원고의 과거 제자와의 인터뷰 장면 등을 함께 방영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경찰은 그 후 원고를 수사한 결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반복되어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재 기자는 원고 소속 대학의 성형외과 출신 개업의들이 원고의 처벌을 위하여 제출한 진정서, 원고의 일부 제자 및 환자 부모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여 금원의 추가지급사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편철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통장 등을 촬영하였다. 또한 원고와 직접 인터뷰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은 민들레회(언청이 관계자들의 친목모임)에 대한 성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위 보도는 저명한 의사인 원고가 정해진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명예의 훼손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②이 사건 보도는 저명한 의사가 정해진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의 웃돈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돈의 수수 명목 및 사용처에 관하여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③또한 환자부모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환자 부모

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치료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4~70만원)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위 돈을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피고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고, 그 상반되는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상반되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의문제기 보도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 보도 및 정당한 의문제기 보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하였다. 이 보도는 원고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증거 및 의혹 사이에 균형을 잡았다고 보여져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

VI. 논평과 사실적시

1. 사실관계 : 2001서울중재247

피신청인은 시민단체에 의하여 언론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간신문사.

논설위원이 ‘또 하나의 권언유착(權言癒着)’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신청인은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서 자신들은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위 칼럼 중 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칼럼의 도입부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론세무조사결과라는 것을 국세청이 발표하던 날 같은 시각에 (중략) 언론개혁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발표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이제 검찰이 나서서 비리언론사주를 구속하고 언론사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은 시각에 짜 맞춘 듯 벌이고 있는 이 두 개의 행사가 오늘 우리사회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새로운 권언유착의 함축적 의미를 보여주는 듯했다.”

2. 중재의 경위

중재기일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 수용의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도 이를 받아 들어서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 하기로 중재 성립

3. 분석

1) 사실보도와 논평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보도는 기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그가 싫다”

는 식의 의견은 개인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이나 칼럼에서의 논평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한 비판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¹⁰⁾ 따라서 칼럼에서 논평과 사실이 혼합되어 있을 때(대개의 논평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므로) 양자의 구분은 매우 어렵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논평의 자유

그러나 논평에 대하여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 보도기사에서의 사실 판단보다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 주제가 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논평의 법리(fair comment rule)가 인정되고 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대하여는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그 결과로서 피논평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논평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에 명백한 허위가 있으면 그에 기초한 논평이 위법함은 당연하다.

미국연방법원은 O.J. 심슨사건을 변호한 코크란 변호사를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진실을 팔아서라도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일간신문의 칼럼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의견표현으로서 명예훼손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¹¹⁾ 위 살인사건재판에서 교묘한 전술로 증거법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심슨을 무죄변론한 변호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판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칼럼의 주제는 언론개혁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착되었음을 비난하는 데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위 논평의 전제로서 일응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과연 논평문에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가에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입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위 유착관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논평의 전제사실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사안의 성질상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사회여론으로 보아 이 정도 의심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10) 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203판결

11)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69호), p.84에 이 판결이 소개되어 있다.

것이고 또한 중대한 공적인 문제이므로 논평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사실주장은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사실적시 여부 판단은 독자가 보도를 보고 느끼게 되는 인상이 그 기준이 되는데,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¹²⁾ 이 사건은 양자가 반론보도를 서로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참고로 사실 여부의 시비와 관련하여 이를 피해 가면서 이 칼럼과 동일한 논조를 편 글 한편을 소개한다.¹³⁾

“느닷없는 홍위병 논란도 연장선상에 있다. 설득노력을 생략해버리고 싶은 집권자의 욕구와 나름의 개혁에 목마른 시민단체의 요구가 우연이든 아니든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난 데 대한 신랄한 직유가 아니겠는가. 순수한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운동이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의 행보와 겹쳐 보일 때에는 정치적 반대자에 의한 오해가 무섭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요즘처럼 절감한 적도 없다.”

4. 유사 참고사례

1) 책임 인정

피고가 사실에서 불법감청을 비난하면서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을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전제로 기술한 경우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판결).

2) 책임 부정; 서울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99가합102724

피신청인(일간신문사)은 논설위원들의 고정 칼럼에 “4·3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제주 4·3 사건 수형자(受刑者) 명부가 최근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계기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위 사건에 대한 공식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부끄러운 자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위와 같은 논평의 전제로서 기재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1948년 4·3 사태 당시 남한의 치안 총책임자는 『전 섬(제주도)에 휘발유를 붓고 빨갱이는 모두 죽여도 좋다』고 부르짖었다고 한다.(중략) 4·3 사태는 특히 이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양민들이 당시의 민병대라 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주민의 10분의 1이 넘는 3만 명이나 학살당했다.’

원고들은 1946.경 38선 이북 지역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결성하였던 ‘서북청년회’의 회원

12)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38032판결

13) 조선일보 2001. 7. 26.자. 박인제 변호사, ‘실종된 법치주의’

들로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우선 ①이 기사가 서북청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②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다음으로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는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도한 억측이라고 보아 진실성을 부정하였으나, ④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에 관하여 “제주 4·3 사건 당시 좌·우익 이념 대립의 와중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당시 우익청년 단체의 대표격이던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서 공산계렬라 토벌에 앞장서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서북청년단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희생도 컸을 것이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논평 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고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흠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성격이 사실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라 수필 형식의 간단한 논평기사인 점에 비추어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결국 이 기사는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됨으로써 피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VII. 편집의 왜곡

1. 사실관계 : 2001서울중재11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의원이 공영방송은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신청인 방송사는 그 다음날 9시 뉴스에서 위 국회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뭘 노리나”등의 4가지 아이টে을 5분 46초간 방송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언론개혁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신문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야당이 위 보도 전부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다.

가장 문제된 부분은 위 뉴스의 첫 부분에서 위 의원의 위 국회발언을 자막으로 보도하고 나서 그 의원이 그 후 피신청인 소속의 기자와 별도로 인터뷰한 화면을 방영한 것이었다(나머지 정정보도에 관한 사항은 이 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그 내용은 그 의원이 “야당의 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이는 국회에서 행한 자신의 발언이 야당의원으로서 할 수 없이 이루어진 듯한 태도를 보여 발언의 무게를 대폭 감쇄시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2. 중재의 경과

1차 중재기일에서 위 의원의 인터뷰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인터뷰시간이 16분 10초나 되었고 그 내용도 언론개혁과 관련된 공영방송의 역할에 관한 것임이 밝혀졌다.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라는 발언은 인터뷰 초반의 수사(修辭)적인 부분에 불과하였다. 중재부가 이를 지적한 결과 2차 중재기일에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신청인이 9시 뉴스에 2분 이상 반론적 보도를 하였다.

3. 분석

취재기자가 취재자료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라 불리는 책임자의 주관 하에 편집담당자가 내용을 가감, 정리한 후 이를 보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취재된 사실 중 보도방향에 맞추어 적합한 부분이 취사선택되는데 보도내용을 정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변경되면 편집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국회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의원의 인터뷰 발언 중 국회의원의 발언 요지와 관련 없는 수사적 부분만을 발췌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다. 편집권은 편집자의 고유한 것으로 편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집은 취재한 자료 중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 언론사가 자료의 취사선택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시간이 16분 이상이나 되고, 그 내용도 국회발언과 관련된 언론개혁과 공영방송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그 실제적 내용은 제외하고 인터뷰 초반의 수사적인 부분만을, 그것도 공적 발언을 철회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말을 골라서 위 의원의 국회발언에 이어서 내보낸 것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발언을 후에 완화 내지 취소하는 취지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편집권의 남용사례로서 인터뷰자료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VIII. 초상권 침해

1. 2가지 사실관계

1) 동의 받지 아니한 사례 : 2000서울중재297, 302, 303

2000. 9. 주식이 폭락하자 피신청인 신문(주간지 및 경제일간지)들은 일제히 “객장마다 오! 주여 비명”, “날아간 내 돈 망연자실”이라는 제목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중년 부부가 증권사 객장에 앉아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여의도 한 증권사 객장을 찾은 투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위 사진의 대상인 신청인부부는 당시 1년만기 예수금을 찾아가라는 증권회사의 통지문을 받고 증권회사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중에 촬영을 당한 것일 뿐이고 주가폭락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었다. 사진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 보도후 신청인은 직장은 물론 금전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하였다.

2) 명백한 착오 사례 : 2001서울중재260

피신청인 방송사가 9시 뉴스에서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확산’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면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몇몇 시민단체의 집회모습을 방송하였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모습 가운데 편집의 착오로 위 운동에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의 시위사진을 보도하였다. 위 사진은 원래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상당히 큰 지면으로 보도하였던 것으로 이조시대 갑옷을 입은 청년이 언론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었다. 다만 9시 뉴스에서는 위 사진을 2, 3초간 흘끗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일반인이 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정도였다.

2. 중재의 경과

첫 번째 사건은 중재신청이 제기되자 3개 언론사가 즉시 정정보도를 게재하여 중재신청이 취하되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위 사진의 방영시간이 아주 짧고 기술적 차원의 실수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중재부가 위 방송은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정정보도를 하되 그 시간대를 저녁뉴스 시간으로 조정하라고 권유하여 중재성립되었다.

3. 분석

1) 초상권의 의의

현대는 이미지시대이다. 언론보도에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진 없는 보도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어 공개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일도 많아져서 개인의 초상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이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한 촬영·작성의 거절권, 촬영된 초상권이 공표·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 영리목적에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초상영리권의 3가지가 포함된다.

2) 초상권 침해 보도의 위법성

(1) 초상 본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범죄혐의로 지명수배되거나 체포된 모습을 보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14)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1994, p.210.

그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면 초상권 침해도 당연히 성립된다.

문제는 초상 본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당초 승낙한 촬영목적을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면 이전에 행한 승낙의 효력은 상실된다. 포괄적 승낙이나 동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유명인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한된다. 유명인에 대한 공적인 관심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유명인은 촬영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명인 중에서도 정치인, 연예인, 예술가 등 절대적 유명인과 특정 사건으로 유명해진 상대적 유명인으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익명성 이익과 공중의 관심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¹⁵⁾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예컨대 시위에 앞장서거나 주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도는 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초상본인들의 사진을 게재하였으므로 명백히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만약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1)사건은 초상본인들이 가사 주식폭락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주식폭락이라는 사태에 더하여 초상본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적인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유사 참고사례

(1) 월간지가 압구정동문화의 실체를 벗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압구정 거리를 걷는 미혼여성인 초상본인의 모습을 승낙 없이 촬영 게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4. 10. 20.선고, 94가합36745판결).

(2) 세계적 시사주간지가 한국의 과소비실태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이화여대생 3명의 인물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선고, 92가단57989판결).

IX. 프라이버시의 침해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368

유명 힙합그룹의 멤버였던 가수가 1995. 사인 불명으로 돌연사하였다. 피신청인 방송사가

15)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민사판례연구』 21집, 1999, p.759 이하

2000. 11.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대담프로에서 그 달에 죽은 연예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도 이 달에 죽었다”고 말하고 고인의 생전 모습 및 자막으로 “○○○, 약물중독으로 사망”이라고 방송하였다. 고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이 되어 고인이 결코 약물(마약)을 한 바가 없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고인의 사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2. 중재의 경과

피신청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중재가 성립되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 및 유족들에게 사과표시방송을 하였다.

3. 분석

1) 프라이버시의 의의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와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¹⁶⁾

개인의 내밀한 부분은 인간적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무단공개는 그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겐 이성관계, 건강문제, 재산상 비밀, 전력 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거나 알릴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

프라이버시는 명예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명예훼손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즉 명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프라이버시는 사람의 내적 비밀의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지만 프라이버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보도자가 면책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일수록 피해가 커지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대부분 명예를 훼손하게 되므로 실무상 차이 없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프라이버시의 가치가 중요시될수록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조각사유

개인의 사적 비밀은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 승낙 없이 보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프라이버시의 공개는 적법하고, 승낙에는 묵시적인 승낙도 가능하다. 오히려 사진촬영 허용, 인터뷰, 일기장이나 관련자료 제공 등 묵시적인 승낙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도하면 위법하게 된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 공직자의 인격이나 개인적인 사항은 공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건강문제나 이성관계는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다. 연예

16) 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인의 경우 연예활동과 관계가 없는 이성관계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나 사건의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도 보도가 허용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원인이 약물중독이나 아니냐는 일단 개인적 내부문제에 속하므로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의 사망에 대하여 특정인이 살인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의 의문사가 사회에서 공지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 자체의 침해는 없었다고 보인다. 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것을 약물사로 단정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되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된다.

4. 유사 참고사례

유방확대수술을 한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주변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게된 경우 유방확대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에 속하므로 친지 등으로부터 비밀사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판결).

X. 반론보도청구권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19조, 방송법 91조).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분쟁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하여 가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분쟁수단에 비하여 권리발생요건이 단순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사건이 반론보도의 실행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언론중재절차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를 한 경우라도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란 점에서 반론보도로 갈음하여 분쟁의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 권리의 형식성

그런데 언론기관은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정정보도청구

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이 본질적으로 형식적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¹⁷⁾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즉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어도 가능하고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 여부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⁸⁾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인쇄매체를 제외한 방송매체에 대하여만 제한적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에서도 미국의 영향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론의 일부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의 원상회복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대륙법계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¹⁹⁾

3.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와 역기능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라는 점은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은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성이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에는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보도내용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론문이나 반박문을 게재·방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신문지면이나 방송시간에 비추어보면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원래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권력기관, 경제단체, 특정 목적의 집단 등 거대화된 사회세

17)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간물법상의 반론권은 비록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제한의 목적이나 적정성 등에 있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9.16선고, 89헌마 165 결정

18)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연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 무절제한 언론의 비방과 인신공격이 심해지자 프랑스의 1822년 출판법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한 것이 세계 최초의 입법례였다. 이러한 반론권은 독일로 전파되어 독일에서도 1831년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의 언론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언론의 사실 또는 가치판단보도로부터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에게 권리구제 수단으로 대등한 무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절대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형평과 정의』 11집, 1997. 1., p.43.

19) 이건웅, “언론에 의한 범의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헌법문제와 재판(하) 재판자료』 (제77집), p.185.

력에 의하여 남용됨으로써 공기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⁰⁾

따라서, 관련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일방, 평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되고 공익에 합치되는 정보의 흐름을 꾀하는 반론권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내지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지워야 할 것이다. 언론사는 반론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좀더 자유롭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한편 반론보도청구의 심리에서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부당한 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

1) 이 권리의 적극적 요건으로는 ①대상이 ‘사실적 주장’일 것, ②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는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결여된 경우, ④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경우, ⑤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아래에서 각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본다.

2) 4가지 사실관계

(1) 평가 관련사례 : 2001서울중재138

진보적 성향의 피신청인(일간신문사)은 “내 맘속에 펄떡이는 극우사관(極右史觀)도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극우사관 해설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본의 극우사관과 유사한 경향의 극우경향으로 보수적 문인 중심의 영웅사관(英雄史觀)과 단군조선 등의 실제 인정론을 내세운 민족주체사관을 지목한 것이다. 신청인은 단군상 보급운동 등 민족정신회복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었다. “종교단체인 신청인은 고대상고사 복원을 통한 혈통적 순수성과 민족자존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족주체사관론은 유신시대인 70년대 정책적 지원 아래 태동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와 인연이 있다. (중략) 단군상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온 단학선원과 김지하 시인이 손을 잡으면서 국수주의 논쟁을 낳기도 했다”

신청인의 반론의 주요 논점은 신청인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 극우사관을 반대한다는 점이었는데 중심문제는 신청인 단체를 극우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였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극우나 극좌로 평하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차원의 가치관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논자와 기준의 설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우분류가 특별히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실상의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2) 개별적 연관성 관련 사례 : 2001서울중재181 외 다수

대한항공 등 항공사노조 파업에 관하여 상당수의 언론이 항공기 조종사 등이 ‘억대연봉’을

20) 성낙인,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72.

받으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과업을 한다거나, 연대과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건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연맹이 단체교섭권한을 항공사 노조에게서 위임받아 협상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보도에는 위 연맹은 거명되지 않았고 항공사 노조이름만 표시되었을 뿐이었다. 신청인이 위 보도와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위 보도 상에는 신청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여 중재를 진행하였다. 상당수의 사건에 합의가 성립되어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고 일부 사건은 중재부가 보도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자 취하한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 연관성 요건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²¹⁾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가 있을 경우 단체 자체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에 단체와 개인 모두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의 행태와 언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단체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영문 이니셜, 또는 성씨만 지칭된 경우에도 상당수의 독자나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을 때에는 연관성이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익의 결여 관련 사례 : 2000서울중재334

피신청인 방송사는 TV보도프로그램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함정, 불법 다단계판매’라는 제목으로 다단계판매의 불법거래와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신청인회사는 다단계판매업 회사로서 위 보도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다단계사업을 제목에서부터 불법으로 규정하여 신용을 훼손하였고 신청인회사의 캐릭터모습이 화면에 나와서 나쁜 인상을 주었으며 인터뷰한 사람들이 모두 신청인회사와의 거래에서 다툼이 있는 사람들로서 일방적인 진술을 하였다면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중재심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보도내용이 대부분 확인이 되었고 일부 미확인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재부의 설명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정당한 이익이란 보도에 대응할 실질적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현저한 타격을 받을 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기 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상 침해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문제부분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된 것과 언론이 사후에 종전의 보도에 대하여 충분한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그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²²⁾

(4) 명백한 허위사실 관련사례 : 2001서울중재115

21) 대법원 2000.2.25.선고, 99다12840판결

22) 대법원 1997.10.28.선고, 97다28803판결

신청인은 결핵백신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에서 위 백신이 효과가 없고 대신에 다른 종류의 백신이 좋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사실을 신청인이 생산하는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공급하는 단체(공영기관)에서 취재하였고, 위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도내용과 반대되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쌍방 주장의 사실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여서 중재부에서 반론보도를 권유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중재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가 진실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이므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이 권리의 발생에 영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즉각적인 반대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문제는 허위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인데, 명백한 허위라는 것은 “반론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 사실이나 기타 언론,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³⁾ 반론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조사를 요하지 않는 허위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덧붙여 보도한 언론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졌을 경우에도 반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자료는 반론문의 허위성을 입증할만한 명백성이 없어서 이 사건은 반론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처럼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반론보도 시행상의 균형성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5항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문의 구성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연관성을 표시하여야 하고 원문보도에 대한 반대사실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원문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반론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도 있다. 반론보도문을 독자투고형식으로 게재할 것을 제안하는 언론사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5항). 이는 반론보도문이 원문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상 당연한 규정이다. 반론보도문에는 통상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이것 이외에 또는 이것 대신에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것도 허용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편집 부문의 기사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현재 언론중재시 사용하는 반론보도문 형식은 다소 짧은 감이 있지만,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6. 선고, 93카합792판결

반대로 반론보도를 장황하게 할 경우 그 부작용도 많아서 효과적인 반론보도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경우에는 화면과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반론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예컨대 원 보도가 9시뉴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 보도의 보도정도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간대의 뉴스시간에 방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9시 뉴스에 보도된 시간이 몇 초 정도로 아주 짧거나 반론의 성격이 보충적일 경우 제한된 뉴스시간에 이에 대하여 반론문을 방영하게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만민교회 사건에 대한 반론보도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MBC 피디수첩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만민중앙교회측은 무려 64건의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41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기각하였으나 23건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방송사측이 불필요한 보도를 거의 매 뉴스시간마다 방송함으로써 반론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잘못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주 원인이지만 방송매체의 특성과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23건씩의 반론보도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²⁴⁾

6.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사의 기본 대응원칙

첫째,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이며 피해자의 즉시적인 피해 방지뿐 아니라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인식아래 긍정적,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그러나 그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건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특히 반론보도문의 분량과 내용에 대하여 균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반론권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면 이러한 균형적 보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XI. 맺는 말 : 언론은 수술용 칼과 같다

이상에서 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언론은 외과의사의 ‘수술용 칼’과 같다는 것이 필자의 소감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칼로 환부를 도려내어야 한다. 그러나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수술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의 배를 가른다면 그 환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언론 없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지만 언론이 잘못하면 피해자도 사실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칼의 사용은 과감하되 신중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언론보도에 기본적으로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충분한 사실확인 and 공평한 취재라는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일방 관계자의 조사나 부분적인 조사만을 기초로 보도한 예가 많다. 이 글에서 다룬 사례 이외에도 이러한 사건이 적지 않았다.

둘째, 언론기관의 취재대상에 대한 인격권의 배려나 보호의식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상인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기자는 대상자에 대하여 익명성의

24) 성낙인, 앞의 논문, p.73 이하.

원칙과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분쟁 판단의 기준점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언론분쟁 판단의 기준점이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²⁵⁾ 언론보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25) 대법원 1988.10.11.선고, 85다카29판결